

“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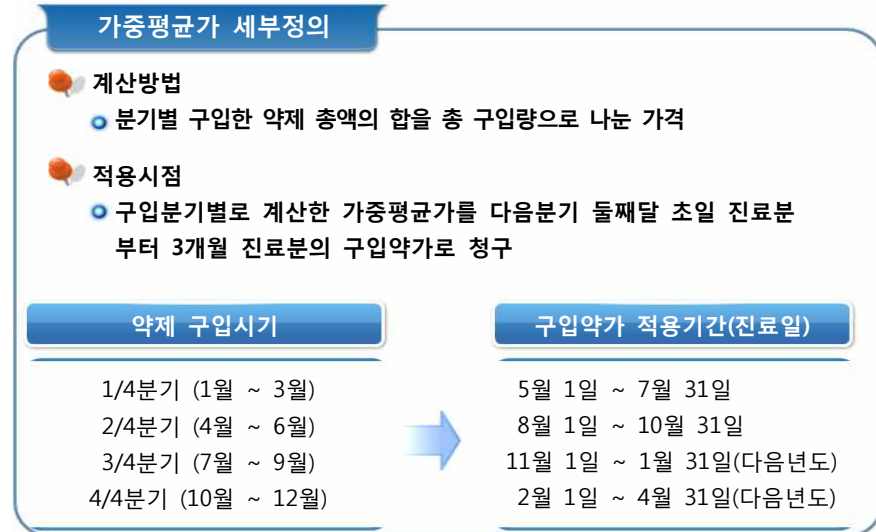
① 약값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?

-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에 사용한 약제를 실제 구입한 가격(이하 ‘구입약가’)으로 청구합니다.



② 구입약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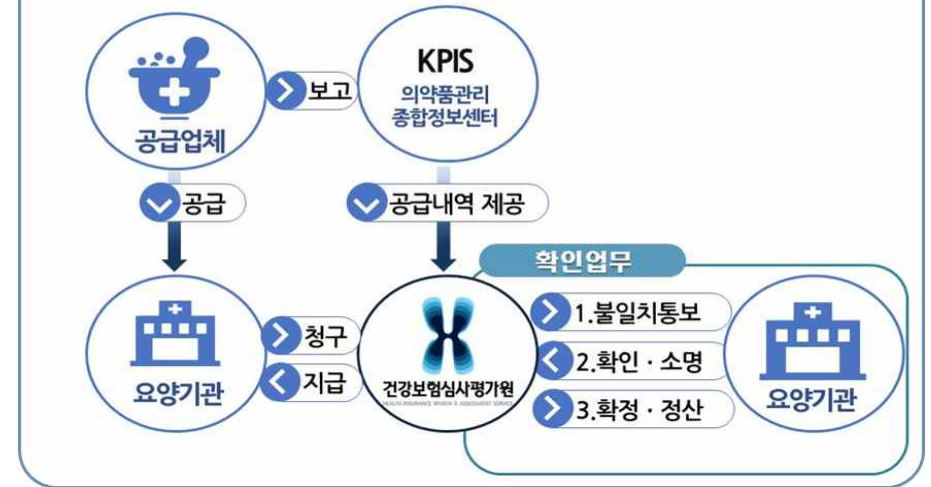
- 해당 분기 ‘가중평균가’를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‘구입약가’로 청구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③ 구입약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·지급된 약값은 차액이 환수됩니다.

구입약가 모니터링 흐름도



④ 구입약가(가중평균가)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요양기관 업무포털(<http://biz.hira.or.kr>)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



- 가격확인: 의약품공급내역, 약품별가중평균가 확인(공급분기 설정 후 조회)
- 제도확인: 구입약가 개요, 법적근거, 절차 및 방법 등 확인 가능

⑤ 요양기관 업무포털(<http://biz.hira.or.kr>)은 어떻게 이용가능한가요?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<http://www.hira.or.kr>) 접속 후 사이트 하단에 [요양기관업무포털](#) 버튼을 이동 및 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구입약가 청구사례 핵심정리

▶ (사례1)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한 경우

-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청구

구입내역				청구내역		
구입일자	구입분기	구입가격	구입량	적용진료일자	적용분기	단가
1월 2일	1/4분기	550원	100개	5월 1일~7월 31일	1/4분기	523원
2월 3일		500원	120개		가중평균가	
4월 5일	2/4분기	600원	100개	8월 1일~10월 31일	2/4분기	547원
5월 20일		520원	200개		가중평균가	

* 1/4분기 가중평균가: $\{(550 \times 100) + (500 \times 120)\} / (100 + 120) = 523(\text{원미만 4사 5입})$

* 2/4분기 가중평균가: $\{(600 \times 100) + (520 \times 200)\} / (100 + 200) = 547(\text{원미만 4사 5입})$

▶ (사례2)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 하지 않은 경우

- 약제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청구

구입내역				청구내역		
구입일자	구입분기	구입가격	구입량	적용진료일자	적용분기	단가
1월 10일	1/4분기	90원	200개	5월 1일~7월 31일	1/4분기	91원
2월 5일		92원	500개		가중평균가	
3월 1일		90원	100개			
4월~6월	2/4분기	구입내역 없음		8월 1일~10월 31일	1/4분기	91원
7월~9월	3/4분기			11월 1일~1월 31일	가중평균가	91원

* 1/4분기 가중평균가: $\{(90 \times 200) + (92 \times 500) + (90 \times 100)\} / (200 + 500 + 100) = 91(\text{원미만 4사 5입})$

▶ (사례3) 약제를 처음 구입한 경우(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경우도 동일)

-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청구
- 이 가격을 다음 분기의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청구

구입내역				청구내역		
구입일자	구입분기	구입가격	구입량	적용진료일자	적용분기	단가
(최 초) 2월 3일	1/4분기	700원	100개	2월 3일 ~ 4월 30일	최초구입가격	700원
3월 14일		450원	100개	5월 1일 ~ 7월 31일	1/4분기	575원
4월 7일		600원	400개	8월 1일 ~ 10월 31일	2/4분기	583원
6월 14일	2/4분기	550원	200개		가중평균가	

* 1/4분기 가중평균가: $\{(700 \times 100) + (450 \times 100)\} / (100 + 100) = 575(\text{원미만 4사 5입})$

* 2/4분기 가중평균가: $\{(600 \times 400) + (550 \times 200)\} / (400 + 200) = 583(\text{원미만 4사 5입})$

▶ (사례4) 약제를 다 사용하고 다시 구입한 경우

- 다시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(청구단가)로 단가변경 적용
- 이 가격을 다음 분기의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적용

구입내역				청구내역		
구입일자	구입분기	구입가격	구입량	적용진료일자	적용분기	단가
1월 7일	1/4분기	550원	300개	5월 1일 ~ 5월 13일	1/4분기	560원
2월 3일		700원	100개		가중평균가	
3월 14일		450원	100개	5월 14일 ~ 7월 31일	5월 14일 변경된 구입단가	550원
4월 7일	2/4분기	600원	400개	8월 1일 ~ 10월 31일	단가변경 이후 2/4분기 가중평균가	533원
5월 14일 (단가변경)		550원	200개			
6월 7일		500원	200개			
6월 20일		550원	200개			

* 1/4분기 가중평균가: $\{(550 \times 300) + (700 \times 100) + (450 \times 100)\} / (300 + 100 + 100) = 560(\text{원미만 4사 5입})$

* 2/4분기 가중평균가: $\{(550 \times 200) + (500 \times 200) + (550 \times 200)\} / (200 + 200 + 200) = 533(\text{원미만 4사 5입})$

단가변경 이럴 때 가능합니다

충족요건

- 새로 약제를 구입한 시점에서 **재고량이 없는 상태**이면서, 새로 구입한 약제의 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른 경우

증빙 서류

- 거래명세서(출고·반품), 의약품 수불대장 및 재고관리대장, 단가변경 확인서 (요양기관장 직인 날인) 등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

※ 이 경우 거래명세서상 새로운 가격으로 약제를 구입한 날짜가 재고소진 날짜보다 더 최근이어야 합니다. ex) 재고소진일 1월 31일, 약제구입일 2월 1일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KPI S
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Service

고객센터 : 1644-2000

본원 : 033-739-2292~8

서울지원 : 02-3772-8921

부산지원 : 051-630-4001

대구지원 : 053-750-9311

광주지원 : 062-605-2702

대전지원 : 042-600-7023

수원지원 : 031-290-1323

창원지원 : 055-239-7603

의정부지원 : 031-830-9611

전주지원 : 063-249-7912

인천지원 : 032-830-7414